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표준화와 지적 재산권과의 마찰

I. 서론

다. SG18의 64Kbps ADPCM

II. CCITT에 있어서의 상황

1. 일반적 상황
2. 표준화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례
 - 가. SG14의 G3 팩시밀리
 - 나. SG18의 32Kbps ADPCM

III. ISO에 있어서의 상황

IV. ANSI 및 IEEE에 있어서의 상황

V. TTC에 있어서의 상황

VI. 결론

III. ISO에 있어서의 상황

국제연합의 하부기관인 국제조직 ISO(국제 표준화 기구)에도 이 문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CCITT의 경우 본고에서 이미 언급한 SG15의 문서(COM 15-R22E)에 대하여 개개외 문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후술할 IEEE와 ANSI의 규정과도 내재적 연계가 있다.

그러나 ISO의 규정에는 특허의 무상실시에 관한 문언은 없으며 합리적 조건으로 라이선스 공여의 확약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물론 무상실시는 거기서 말하는 합리적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몇몇 규정에서 무상실시가 명시되어 있는데 대하여 이를 통신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 TV, 스탠드 어론(Stand-alone)제품 등과 다르게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말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되고 ITU 조약에서 그 정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통신의 고도화가 세계 상호의 이해를 깊게해 가고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 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상호 접촉성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ISO의 규정인 바 기술적 근거에서 정당화 되려면 특허사항의 이용을 포함한 표준안을 준비하는 것은 원칙으로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첫머리에 되어 있고, 이 부분은 IEEE나 ANSI에 있어서의 문언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사하다.

단지 "Even if the terms are such that there are

no alternative means of compliance"라는 첨가 문구가 ISO의 경우 존재한다. 다음으로 CCITT의 SG 15의 전기문서(COM 15-R22E)와 유사한 점으로 ISO의 경우는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Patent and like rights)의 취급이 문제로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권위가 있거나, 또한 포괄적 정보를 ISO로서는 제공할 수 없지만 입수 가능한 정보의 최대한 공개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특히 등에 관한) 표준안을 제안하는 멤버가 "Any known patent like rights on a worldwide basis of any known pending applications"에 관하여 ISO측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문언에 이르기까지 SG 15의 전기 문서가 답습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다르다.

기술적 근거에 의거하여 이러한 제안이 채택될 경우, 지득할 수 있었던 특허권자가 특허권과 그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공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전 세계적 규모로 합리적 조건하(Throughout the world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에 그것을 공여하는 라이선스 교섭에 응한다는 요지의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도록 제안자인 멤버가 의뢰하게 한다. 권리자의 이 스테이트먼트는 ISO의 중앙사무국에 보관되는 것으로 하나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두가지 점이 중요한데 우선 "If the patent holder does not provide such a statement, the technical committee should only proceed with the inclusion of a patented item if council decides t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justify this."라고 되어 있고, 권리자의 존재(Pending applications 포함)가 판명되었는데 이자가 하등의 스테이트먼트도 제

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은 본고에 표시된 다른 표준화 기관의 규정에는 없다. (TTC에도 없다.)

실제에 대하여서는 CCITT의 경우에 적용하면서 기회 약간 제시하였으나 표준화의 정책으로서는 극히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의 취급은 전기와 같이 되겠으나 이것을 명시하여 두는 것은 전기 “표준화의 역학”이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히 뜻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Should it be revealed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at licenses under a patent and like right cannot be obtained under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the International Standard should be referred back to the technical committee for further consideration.”라고 되어 있다.

표준화 후의 이러한 대처 방법을 명시한 것은 ISO 뿐이나 타당한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일본의 TTC도 이 방법을 채택키로 되어 있다. 더욱이 기술한 미국의 IEEE, ANSI의 규정에 있어서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심사에도 표준화 작업의 내재적인 영위로써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표준이 빈번하게 개정 또는 변경되는 것은 이용자나 사업자가 안심하고 장치를 구입하거나 제조할 수 없게 되어 혼란을 초래할 뿐이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술한 것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IV. ANSI 및 IEEE에 있어서의 상황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 규격 협회) 및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 전기전자 학회)는 미국의 민간단체로서 표준화 작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ANSI 및 IEEE에 있어서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하여 깊이있는 세부규정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큰 줄거리에 있어서는 유사하고 문언도 거의 같은 부분이 많으나 중요한 차이도 있다. 그리고

양쪽 공히 일본의 TTC에서 후술할 기본 지침 작성상 충분히 참고가 되고 있다. 우선 IEEE쪽부터 본다면, ANSI와의 대비에 필요상 이하 a), b)로 표시하고, IEEE의 표준 메뉴얼 7은 첫머리에 특허에 관하여 정하고 그 첫머리에 a)—특허사항의 이용을 포함한(Include the use of a patented item) 표준안을 작성하는 것은 기술적 근거에서 그것이 정당화되려면 원칙으로서 그 자체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특허(발명)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표준안의 채택 전에 IEEE는 특허권자로부터 IEEE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중 어느쪽 엔가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Assurance in the form of general disclaimer to the effect that the patentee does not hold and does not anticipate holding and United States Patent covering any invention whose use would be required for compliance with the proposed IEEE Standard : or assurance that a license shall be made available to applicants without compensation or under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free of any unfair discriminations”라는 내용의 확약서이다.

IEEE표준이 ANSI에 정하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와 같이 미국의 국내 표준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특허권 및 그에 따르는 라이선스 공여만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이 CCITT와 다르다. 일본에 TTC에서의 기본지침 작성작업에도 과연 국내의 특허권 등을 문제 삼는 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의논이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 IEEE의 전술한 규정에 있어서도 무상에 의한 라이선스 공여가 하나의 선택부분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후술 ANSI의 경우도 같다.) 이라는 점에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상이 아닌 경우 합리성 조건과 병존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에도 약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후술의 Patent Notice에서는 “On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terms and condition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

나, 표준화 기관측에서 권리자측으로부터 제출된 요약서(확인서)에 관하여 특히 무차별 요건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TTC의 경우도 해당) 표준의 보급을 해치는 것에 대한 유무를 기본지표와 목적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주목해야 할 점으로 IEEE의 이 규정이 c)-모든 라이선스의 조건(The term and conditions of all licence)을 IEEE측이 심사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또한 ANSI의 측에서는 이 c)에 대하여는 후술과 같이 재차 약간의 문제점이 부과되어 있다. 표준화 기관이 표준안과 관계하는 특허권의 라이선스 공여 조건에 대하여 요약서의 제출을 권리자측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라이선스 조건의 공개도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서 규정화되어 있는 것이나, IEEE의 경우(ANSI도 같다) 심사가 어떤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이 점에서는 전술의 ISO의 규정이 참고될 것이다). 어쨌든 공공재산인 표준의 타당하고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표준화 기관이 거기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불공정 내지는 불합리한 것이라 하등의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며 그것을 미리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d)-IEEE 표준이 특허권의 이용(실시)을 내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에는 Patent Notice가 붙어있다. 이것은 일본의 TTC에서도 채용된 타당한 방법이지만 CCITT 표준에서는 그것이 없다. 전기의 CCITT 총회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나, GATT Standard Cord에 입각한 국제 표준화 작업과 연동하여 이루어진 국내의 그것에 있어서도 표준을 실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이러한 Notice를 표준자체에 붙여두는 것도 무용한 혼란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CCITT나 후술의 ISO의 경우에 세계적인 범위내에서 특허권 등의 문제가 취급되는데 대하여 IEEE 및 ANSI 그리고 일본의 TTC에서도 국내 특허권만이 문제된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기기의 수출을 고려할 경우, 기기 메이커의 오해(표

준=무선이라고 항상 생각해 버리는 경향도 일부에서는 뿌리깊게 박혀 있다.)를 피하기 위하여서도 CCITT 등에서 이미 의논이 되어서 판명되어 있다면, 해외에서의 특허권 등의 존재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부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용한 혼란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IEEE의 규정에 있어서의 Patent Notice에서는(ANSI의 경우도 같다) 개개의 특허권을 명시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 표준의 준수에 있어서 특허권에 포함되는 발명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 무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시가 없는 것이 약간 마음에 걸리지만 권리자가 합리적이고 또한 무차별적 조건에 의하여 라이선스를 공여하는 취지의 Statement를 제출(While)하였다가 거기에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는 유일의 라이선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 Patent Notice가 하등의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is made or implied”) 요지의 신중한 문언(이것은 ANSI의 것은 아님)이 붙음과 공시에 e)-특허문제의 포괄적 조사에 대하여 IEEE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요지(Disclaimer)의 문언이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ANSI와 TTC에서도 같다.)

어떻든간에 CCITT의 종래의 입장이 라이선스 교섭은 CCITT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표준작성 후의 문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ISO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하여 IEEE 및 ANSI 그리고 TTC는 라이선스 공여의 조건을 별도로 제출시키는 등 한발 더 나아가는 것에 재차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ANSI의 규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IEEE의 전기 규정 차이에 중점을 두지만 그전에 쌍방 모두 권리자 측으로부터 어떻게 요약서를 받을 것인가 하는 점으로 즉 “The Institute shall receive from the patent-holder(in a form approved by the Institute)… assurance …”라고 되어 있어도 권리자측이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지적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ISO규정에는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전술 a)는 ANSI의 규정에서도 똑같다. 다만 전기 b)의 요약서 내용에 대하여 ANSI에서는 무상, 유상 어느쪽의 경우도 Shall be가 아니라(본문의 전기 인용 참조) “a license will be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점이다. IEEE와의 다른점은 우선 요약서에 대한 무상실시의 경우를 기술한 방법에 나타나 있다. 즉 IEEE에서는 단순히 무상의 경우라고만 쓰여 있으나, ANSI에서는 처음부터 특허권의 무상실시는 해당표준 실시목적이라는 제약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Assurance that : (1) a license will be made available without compensation to applicants desiring to utilize the license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standard or (2) …”라고 되어 있어, 확실한 이치로서는 표준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표준 실시 목적 이외의 이용에 대하여서까지 동시에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청은 표준안 정책상으로 있을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표준실시 목적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은 부분이 꽤 있으므로 이점을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표준화의 원활하고 타당한 보급을 위한 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재판소에서의 권리자가 제출한 스테이트먼트의 법적인 구속력이나 해석이 문제된다. 국내 표준과의 관계에서 국내 특허권의 실시에 관하여 제출된 요약서에 대한 문제에서는 해당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이때 표준화의 기본정책, 표준의 공공 재산적 성격을 감안하여 무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주목할 것은 전기의 c)에 관하여 IEEE와는 달리 ANSI에 있어서는 모든 라이선스 공여 조건뿐 아니라, 그 라이선스 공여 조건을 승낙하거나, 승낙한다는 요지가 기술되어 있는 라이선스 수에 관한 Statement(A statement of the number of independent licensees, if any, which have accepted of indicated their acceptance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icense)까지도 ANSI에 있어서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유상실시의 특허권을 포함하는 표준의 경우 전술사항은 해당 표준의 원활하고 타당한 보급(표준의 공공재적 성격의 현실적 보장)을 위하여 그것이 너무 번잡한 작업을 권리자측에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 충분한 정책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표준실시에 관한 개별적 라이선스 교섭에 있어서의 크레임을 표준화 기관이 접수하여 그에 바탕을 두고 별도로 조사한다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미국의 표준화 기관이 거기까지 깊게 지적 재산권 문제와 별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떠한 의미에서 방과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EEE 및 ANSI 공히, 권리 보유자가 당초 요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던 라이선스 공여를 나중에 변경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규정상 명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술과 같은 심사의 취지로 보아 재차 그 내용을 요약서로서 제출케 하는 것(후술에 TTC에서의 취급을 참고)에는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IEEE 및 ANSI에 있어서 실제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좀더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ANSI의 규정에 있어서는 권리자가 제출하는 스테이트먼트가 ANSI에서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Shall) 것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 이때 주의하여야 될 것으로는 권리자가 제시한 라이선스 공여 조건에 대하여 해당 권리자가 이것들을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The bases for considering such terms and conditions free of any unfair discriminations)를 제시하는 스테이트먼트도 별도로 제출, 보관해야 한다는 요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상의 여러 점을 근거로 표준 작성 후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으나 이 최후의 절차가 ISO의 규정과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애석하다. 또 이렇게 보관된 스테이트먼트의 열람은 실제의 개별적 라이선스 교섭이 표준화 기관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널리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표준안 작성과정의 미묘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람에 대하여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후의 열람은 일본의 TTC에 있어서 적어도 표준안 작성 후에는 이를 널리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V. TTC에 있어서의 상황

TTC(전신전화 기술 위원회)는 우정성의 이른바 장려 통신방식과 병행하여 민간 베이스로서 국내 표준(임의표준)의 작성에 종사하도록 1986년 10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즉 정지화상 TV 전화(애널로그 전화대역 정지화상 영상통신방식)의 표준화(1989년에 정식으로 결정)에 있어서 복수의 일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문제시 되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상공개(실시)의 약속으로 낙착되었고, 그때 공업 소유권 등에 관하여서의 잠정취급이 정하여 졌다.

거기에는 '권리소유자는 TTC표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특허 등에 대하여서 TTC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일체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실시의 권리를 공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요지가 우선 명시되고, 적절한... 재조건하에서의 실시권 공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TTC 표준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도 부득이 하다'라고 되어 있다. 전술의 잠정취급에서는 표준안 결정까지 특허 등에 관한 확인서를 권리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그때 특허 등의 건명에 대하여서는 국내, 국외의 구별도 기입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후 1989년 3월 TTC 내부에 공업 소유권 등, 취급 기본지침 등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1989년 5월 18일 동위원회가 제출한 전신전화 기술위원회에서 공업 소유권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TTC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이하에서 그 골자를 기술한다.

동 기본 지침을 그 첫머리에 두고(외자계 사업자를 포함한 130개사의 회원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TTC의 표준제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TTC는 TTC 표준의 보

급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TTC 표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공업 소유권 등이 만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무상 실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표준화를 함에 있어 충분히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적 기반이 있다.

그러나 그 무상 원칙이 약간 늦춰진 형태에서 말하면 서문에 밀린 권리 소유자가 해당 이권의 내용과 조건을 명백히 한 다음, TTC의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의 비배타적 공업 소유권 등의 실시를 수락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무상 실시의 경우와 함께하여 규정되고 권리자가 전술의 어느쪽인가를 선택할 경우는 TTC 표준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요지가 명시되어 있다. 다만 해당 TTC 표준을 사용하는 다른자가 해당 TTC 표준이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 되는 공업 소유권 등의 권리를 소유하고, 또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해당 권리 소유자가 그자를 (1) 또는 (2) (전기의 두가지 경우를 말함)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쪽이던지 무차별 조건은 적절한 조건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술의 단서는 CCITT의 경우 실례에 따라서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Some conditions of reciprocity의 부류라고 보아도 좋다.

또한 본 기본 지침에 있어서는 공업 소유권 등이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을 말하며 출원중인 것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선 저작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금후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기본 지침 자체에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지침이 문제삼는 것은 TTC 표준이 국내 표준이라는 것으로 하여 국내의 공업 소유권 등에 한한다는 요지의 합의가 있다. 이들의 문제점은 본 기본 지침의 운용세칙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더욱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특허 중인 것, 특히 출원 공개 전의 특허에 대해서 기업 비

밑에 속하므로 TTC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동 지침 검토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지난친 면도 있으나 CCITT의 예와 ISO의 기술한 규정 등을 상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TTC 표준화회의 소관부문 위원회에 있어서 해당 TTC 표준안 결정 전까지 공업 소유권 등의 실시 권리에 관한 확인서를 TTC 이 사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주로 특허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출원 공개 전의 제출에 관해 공개후 재차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확인서는 TTC에서 보관(그 열람에 관하여서는 이미 말한 바대로 해결해야 하지만 확인서 제출자의 의사 확인을 별도로 하여 두는 것이 무난할지?)된다. 그 표준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해당 표준에 Patent Notice가 부여되는 바, 특히 해당 권리와 권리자를 특정한 후에 「주기」가 이루어 진다. 이 「주기」는 권리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간략화하면서 객관적으로 재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특허권 등의 유무에 관해 TTC가 아무런 보증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권리자는 신속히 재차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라이선스 공여의 조건 변경이 문제가 된다.

1983년 가을에 답신이 예정되어 있는 본 기본 지침의 운용 세칙에는 「TTC에 있어서의 표준화 활동의 원활한 진전 또는 작성된 TTC 표준 보급에 장애가 될만한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언이 삽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 취지는 권리자측의 자유를 불편하게 속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변경이 ISO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표준의 폐지 또는 표준안의 철회 등의 조치로 연계될 수 있다는 한계성의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경이라는 말에 붙여진 한계가 꽤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TTC의 비회원이 갖고 있는 특허 등에 관한 것이나 역시 세칙에서 전회원이 전력을 다하여 그 파악에 노력하여 판명되면 TTC 사무국이 확인서의 제출을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표준안의 재심사, 표준의 폐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한편 역시 세칙에서 비회원도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업 소유권 등에 관련(TTC에 대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TTC의 클럽적 색채를 불식하는 데 유의하고 있다.

VI. 결 론

이상 CCITT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 작업에서 특허 문제가 눈에 띄게 논의된 대표적인 예의 몇가지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전술의 검토 결과에서도 지적 소유권(특허권)의 무상 실시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 작업의 현실에 있어서 그리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일본의 사업자만의 특이한 요청이라고 말할 수 없고, 미국의 기업을 포함하여 통상적인 지적 재산권의 이용은 유상이어야 하며 무상에 의한 것이 일은 배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자기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용된다는 자체가 커다란 기업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것(불채용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Damage로 될 수 있다)을 포함하여 커다란 표준화의 역할중에서 개개의 권리 보유자가 스스로의 정책 판단을 개별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다.

표준화 기관은 하등의 무상 실시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 행사를 위하여 스테이트먼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권리 보유자측에서도 전술과 같은 정책 판단 하에 ‘출원 공개 전의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기업 비밀이므로 통상 언급할 수 없다’는 완고한 태도는 반드시 갖고 있지 않다. 적어도 이런 형태에서의 표준화 기관이 지적 재산권의 활동(즉 무상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표준화 기관이 지적 재산권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그것에 의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적 재산권 보호 요청에 역행한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반드시 모든 권리 보유자(출원중의 것 소위 잠재적인 것을 포함)가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술의 검토에서도 판명된다. 그러나

어떻든 표준화 작업의 비멤버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손을 써서 지적 소유권에 관한 의사 표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만이 강조된다면 금후 사업자가 이 종류의 스테이트먼트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약간 염려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도 후술한 미국 표준화 기관에 있어서의 실제적 취급을 충분히 조사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서 표준화와 지적 재산권과의 마찰이 미국 내에 있어서 현재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출된 스테이트먼트의 법적인 구속력에 대해서는, 종래 그것을 제출하는 사업자에 있어 이것을 계약(제 3자를 위한 계약적인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명확한 것 같으며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국제 표준화 기관 앞으로 제출되는 스테이트먼트의 법적 구속력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국제 계약으로서 그 준거법인 문제가 된다. 어느 국법에 의거하여 그것을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국제 사법학이 지적 재산권의 속지성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이것을 처리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 취급한 문제가 국제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느지의 여부는 금후의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십자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체적인 통상 전략을 고려할 때, 거의 맹목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고집하는 자세에서는 이 영역이 언젠가는 여러가지 혼란에 말려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통신 분야에서 표준화의 이론과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의 이론이 전술했던 마쓰바라씨의 말과 같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관계이다. 이의 조화점을 위하여는 국제, 국내적 표준화 작업의 실재를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처 방법과 연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표준화는 통신의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특화된 부분 영역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회의때마다 방대한 양의 종이 소비되고, 본고로서도 중요한 1차 자료는 그 속에 과묵히 정식 보관조차도 어려운 채 오래지 파기하게 되었다.

지금이야 말로 새로이 전기 통신에 관한 표준화의 의의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으며, 아마

도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표준화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적절한 레벨을 설정하는 위에 후자의 요청과 맞바로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정책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작권에 관한 EC 위원회의 녹서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과도한 보호를 가져온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하여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나 강제 라이선스의 부여와 같이 표준화 정책(Standardization Policy)에 의한 조정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EC에는 새로운 표준화 기관으로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 기구)가 1983년 3월에 설립되어 산하 기술회의(Technical Assembly)에는 지적 재산권 위원회(IPRC)가 설치되어 있다.

IPRC 내부에서의 검토는 아직 형체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 같으나, 최근 ANSI 하에서 일본의 TTC와 유사한 입장인 T1위원회측으로부터 T1위원회·TTC·ETSI 삼자에 의한 공동 작업의 제안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국제 표준의 세계성을 손상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것은 통상 경계를 요하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다국간) 협조의 영역이 넓어지는 가운데 표준화의 정책기반이 한층 견고하게 되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개개의 사업자의 내부에서도 표준화 부문과 지적 재산권 부문 그리고 연구개발 부문의 사이에서 충분히 의견 조정이 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이 본 조사 연구의 과정에서 보였다. 같은 문제로 개개의 사업자를 초월하여 널리 관민에 대하여 그리고 외국 측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를 누비며 일반 대중에게 호감을 주는 플래카드 밑에 지적 재산권 보호만이 과대하게 절규되고 있는 것을 가장 경계하여야 한다.

본 보고에 제시한 「일견 극히 기술적이라고 생각되어지기 쉬운 문제」가 전기통신 분야와 관계가 있는 GATT 우루과이 라운드 제교섭의, 말하자면 빙산의 수면이하 부분으로써 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좀 더 일반적인 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